

# 과업지시서

1. 사업명 : IoT 서비스를 활용한 물품대여시스템 구축

## 2. 과업목적

가. DDP 고유의 물품대여시스템을 마련

나. 물품대여시스템의 간소화로 인하여 편의제공 및 관리자의 운영편의

3. 과업기간 :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

## 4. 과업내용

- DDP 고유의 물품대여시스템을 제작하여야 한다.
- DDP 물품과 조화로운 비콘을 제작하여야 한다.
- 물품대여시스템은 대여자의 정보를 입력받을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.
- 물품대여시스템 관리자의 입력 및 수정이 가능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.
- 물품대여시스템은 물품의 대여 및 반납 과정을 간소화하여 제작하여야 한다.

## 5. 과업 세부 사항(세부내용 및 과업절차)

- 물품대여시스템은 일반사용자와 관리자가 별도로 구분되어야 한다.
- 비콘은 DDP로고와 물품 색상에 맞추어 제작하여야 한다.
- 생활방수 및 신호알림이 가능한 비콘을 제작하여야 한다.
- 물품대여시스템 관리자페이지는 관리자가 편리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.
- 대여 물품의 항목은 대, 중, 소분류 등으로 입력 가능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.
- 대여자의 신상정보는 보안상태로 처리되어야 한다.
- 대여자 입력사항 중에는 이미지 촬영기능과 담당자 입력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서버 사용이 중단되는 경우, 데이터와 운영 프로그램을 재단에 인수인계하여야 한다.
- 물품대여시스템은 추후 프로그램 확장이 가능하여야 한다.

## 6. 기타 (과업수행 일반사항)

가. 일반사항

- 1) 본 용역은 서울디자인재단 제반규정에 의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과업지시서 상의 용어 해석과 과업 내용에 대하여 발주처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·지시에 따른다.
- 2) 용역수행은 최신의 전문기술력을 활용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, 우리 서울디자인재단

인재단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3) 용역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이 다음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.

- 발주처의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아니할 때
- 계약서상의 과업수행기간 이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과업수행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해 과업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- 사전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
- 상기 계약해지사항에 해당할 경우 발주처는 과업수행업체에 대하여 일체의 용역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며 기 지급분이 있을 경우 과업수행업체는 일체 반환조치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.

나. 과업변경 및 용역기간의 연장

- 1) 용역계약 후 과업지시서의 내용은 발주처의 업무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이로 인한 과업범위 및 용역금액의 변경은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로 결정한다.
- 2) 용역기간은 발주처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발생 시를 제외하고는 연장할 수 없다.

다. 과업수행 성과물

- 1) 용역 후 발주처에서 과업 지시서에 의거, 보완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수정, 보완되어야 한다.
- 2)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입수된 자료와 산출물은 발주자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과업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.

라. 프로그램 조정의 실시

- 1) 발주처의 준공 검사 시 부족한 사항이 있을 경우 프로그램 조정을 하여야 한다.

마. 비밀의 준수

- 1) 용역업체는 본 계약기간 전후를 막론하고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,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. 이의 위반으로 인한 보안사고 발생 시에는 모든 민·형사상의 책임을 진다.